

세종 5-1 양우내안에 아스펜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1.10.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00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1.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1.10.(금)	'25.01.20.(월)	'25.01.21.(화)	'25.01.22.(수)	'25.02.03.(월)	'25.02.07.(금)~ '25.02.11.(화)	'25.02.14.(금)~ '25.02.16.(일)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 5-1 양우내안에 아스펜」 내 분양 상담전화(☎ 1551-300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세종양우내안애아스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1.1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01.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60%를 우선공급하며,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40%를 공급(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6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4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1.20.(월)	‘25.01.21.(화)	‘25.01.22.(수)	‘25.02.03.(월)	‘25.02.07.(금)~ ‘25.02.11.(화)	‘25.02.14.(금)~ ‘25.02.16.(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1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 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주택의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887호(2025.01.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총 698세대
[특별공급 418세대(기관추천 69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126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1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²)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타입별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725	01	084.0000A	84A	84.5013	25.6133	110.1146	66.1345	176.2492	72.5486	186	403	40	42	74	12	77	245	158	32	
			84A1	84.8547	25.6587	110.5134	66.4111	176.9245	72.8521	119										
			84A2	84.7929	25.6543	110.4472	66.3628	176.8100	72.7990	98										
	02	084.0000B	84B	84.8824	26.9554	111.8378	66.4328	178.2706	72.8758	26	143	14	14	26	5	28	87	56	7	
			84B1	84.9068	26.8533	111.7601	66.4519	178.2120	72.8968	54										
			84B2	84.9735	26.8678	111.8413	66.5041	178.3454	72.9540	63										
	03	084.0000C	84C	84.5237	26.8350	111.3587	66.1521	177.5108	72.5679	5	110	12	11	20	3	21	67	43	5	
			84C1	84.4379	26.6412	111.0791	66.0849	177.1640	72.4942	54										
			84C2	84.8094	26.7219	111.5313	66.3757	177.9070	72.8132	51										
	04	084.6770D	84D	84.6770	26.1583	110.8353	66.2721	177.1074	72.6995	32	32	3	3	6	1	6	19	13	3	
	05	084.9695P	84P	84.9695	29.1936	114.1631	66.5010	180.6641	72.9507	2	2	-	-	-	-	-	-	2	-	
	06	084.0000T	84T1	84.9129	28.9264	113.8393	66.4567	180.2960	72.9021	2	8	-	-	-	-	-	-	-	8	4
			84T2	84.8824	26.9554	111.8378	66.4328	178.2706	72.8759	2										
84T3			84.5269	27.9646	112.4915	66.1546	178.6461	72.5707	2											
84T4			84.5237	26.8350	111.3587	66.1521	177.5108	72.5680	2											
합 계											698	69	70	126	21	132	418	280	51	

-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은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등,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주택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시설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이라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의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주택형)		084.0000A	084.0000B	084.0000C	084.6770D	084.9695P	084.0000T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	2	1	1	1	-	-	5
		대전광역시	2	1	1	-	-	-	4
		충청남도	3	1	1	-	-	-	5
	국가유공자		9	2	2	1	-	-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1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	1	-	-	-	7
	중소기업 근로자		5	1	1	-	-	-	7
	북한이탈주민		1	1	1	-	-	-	3
	우수선수		1	1	1	-	-	-	3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9	2	2	1	-	-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2	14	11	3	-	-	70	
신혼부부 특별공급		74	26	20	6	-	-	12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	5	3	1	-	-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77	28	21	6	-	-	132	
합 계		245	87	67	19	-	-	41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청약신청 시 주택형(084.0000A, 084.0000B, 084.0000C, 084.6770D, 084.9695P, 084.0000T)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약식표기된 개별 타입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0000A	084.0000B	084.0000C	084.6770D	084.9695P	084.0000T
약식표기	84A, 84A1, 84A2	84B, 84B1, 84B2	84C, 84C1, 84C2	84D	84P	84T1, 84T2, 84T3, 84T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5.03.15.	2025.04.15.	2025.06.15.	2025.11.15.	2026.04.15.	2026.09.15.	2027.02.15.		2027.07.15.		
084.0000A	84A	1207,1209,1210,1211, 1212,1213동 1호 1202,1203,1204, 1206,1208동 1,2호 1205동 1,2,3,4호 1214,1215동 1,3호 1216,1217동 1,2,3호	1F	22	106,485,129	459,514,871	566,000,000	20,000,000	3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13,200,000	
			2F	29	106,485,129	466,514,871	573,000,000	20,000,000	3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14,600,000
			3F	8	106,485,129	473,514,871	580,000,000	20,000,000	3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000,000
			4F	14	106,485,129	480,514,871	587,000,000	20,000,000	3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17,400,000
			5~9F	58	106,485,129	488,514,871	595,000,000	20,000,000	3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19,000,000
			10F 이상	55	106,485,129	502,514,871	609,000,000	20,000,000	4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84A1	1201,1202,1203,1204, 1207,1209,1210,1211, 1212,1213,1214,1215, 1218동 1호 1205동 2,3호 1206,1208 2호 1216,1217동 1,2,3호	3F	20	106,893,127	473,106,873	580,000,000	20,000,000	3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000,000	
			4F	2	106,893,127	480,106,873	587,000,000	20,000,000	3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17,400,000
			5~9F	64	106,893,127	488,106,873	595,000,000	20,000,000	3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19,000,000
			10F 이상	33	106,893,127	502,106,873	609,000,000	20,000,000	4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84A2	1201,1207,1209,1210, 1211,1212,1213,1214, 1215,1218동 1호 1202,1203,1204, 1206,1208동 2호 1205동 2,4호 1216,1217동 3호	3F	3	106,823,950	473,176,050	580,000,000	20,000,000	3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000,000	
			4F	16	106,823,950	480,176,050	587,000,000	20,000,000	3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17,400,000
5~9F			38	106,823,950	488,176,050	595,000,000	20,000,000	3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19,000,000	
10F 이상			41	106,823,950	502,176,050	609,000,000	20,000,000	4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084.0000B	84B	1210,1211,1212, 1214,1215동 2호	1F	5	107,706,406	454,293,594	562,000,000	20,000,000	3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12,400,000	
			2F	5	107,706,406	461,293,594	569,000,000	20,000,000	3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13,800,000
			3F	2	107,706,406	468,293,594	576,000,000	20,000,000	3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15,200,000
			5~9F	6	107,706,406	483,293,594	591,000,000	20,000,000	3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10F 이상	8	107,706,406	497,293,594	605,000,000	20,000,000	4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084.0000C	84B1	1201,1207,1209, 1210,1211,1212, 1218동 2호	3F	6	107,671,000	468,329,000	576,000,000	20,000,000	3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15,200,000	
			5~9F	21	107,671,000	482,329,000	590,000,000	20,000,000	3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18,000,000
			10F 이상	27	107,671,000	497,329,000	605,000,000	20,000,000	4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84B2	1201,1207,1209, 1210,1211,1212, 1214,1215,1218동 2호	4F	9	107,751,598	475,248,402	583,000,000	20,000,000	3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16,600,000
			5~9F	18	107,751,598	483,248,402	591,000,000	20,000,000	3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10F 이상	36	107,751,598	497,248,402	605,000,000	20,000,000	4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084.0000C	84C	1210,1211,1212동 3호	1F	2	107,247,354	458,752,646	566,000,000	20,000,000	3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13,200,000	
			2F	3	107,247,354	465,752,646	573,000,000	20,000,000	3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14,600,000	
	84C1	1201,1207,1209, 1210,1211,1212, 1218동 3호	3F	6	107,037,827	472,962,173	580,000,000	20,000,000	3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16,000,000
			5~9F	21	107,037,827	487,962,173	595,000,000	20,000,000	3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19,000,000
			10F 이상	27	107,037,827	501,962,173	609,000,000	20,000,000	4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84C2	1201,1207,1209, 1210,1211,1212, 1218동 3호	4F	7	107,486,728	479,513,272	587,000,000	20,000,000	3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17,400,000
			5~9F	14	107,486,728	487,513,272	595,000,000	20,000,000	3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19,000,000
			10F 이상	30	107,486,728	501,513,272	609,000,000	20,000,000	4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084.6770D	84D	1213동 2호 1216,1217동 4호	1F	2	107,003,632	466,996,368	574,000,000	20,000,000	3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14,800,000
2F				3	107,003,632	473,996,368	581,000,000	20,000,000	3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16,200,000	
3F				3	107,003,632	481,996,368	589,000,000	20,000,000	3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17,800,000	
4F				3	107,003,632	488,996,368	596,000,000	20,000,000	3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19,200,000	
5~9F				15	107,003,632	497,996,368	605,000,000	20,000,000	4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10F 이상				6	107,003,632	511,996,368	619,000,000	20,000,000	4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23,800,000
084.9695P	84P	1206,1208동 1호	10F 이상	2	109,152,495	789,847,505	899,000,000	20,000,000	6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179,800,000	
084.0000T	84T1	1207,1209동 2호	1F	2	108,930,100	548,069,900	657,000,000	20,000,000	4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31,400,000	
	84T2	1207,1209동 2호	2F	2	107,706,407	552,293,593	660,000,000	20,000,000	4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32,000,000	
	84T3	1207,1209동 3호	1F	2	107,933,274	546,066,726	654,000,000	20,000,000	4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30,800,000	
	84T4	1207,1209동 3호	2F	2	107,247,355	557,752,645	665,000,000	20,000,000	4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33,000,000	

■ 유의사항

-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설 예정인 건물은 계약면적에 따라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비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혁신성장시설, 오피스텔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 상기 분양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상기 분양대금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분양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배점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30 582 2049 107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230 1268 2049 140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1.10.(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교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228 711 2011 1473">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주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주택은 60㎡ 초과 주택형만 공급되므로, 단독세대 신청자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19 922 2016 1396"> <thead> <tr> <th data-bbox="219 922 315 967">단계</th> <th data-bbox="315 922 521 967">소득구분</th> <th colspan="2" data-bbox="521 922 2016 967">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19 967 315 1050">1단계</td> <td data-bbox="315 967 521 1050">신생아 우선공급(15%)</td> <td colspan="2" data-bbox="521 967 2016 105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19 1050 315 1133">2단계</td> <td data-bbox="315 1050 521 1133">신생아 일반공급(5%)</td> <td colspan="2" data-bbox="521 1050 2016 113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19 1133 315 1184">3단계</td> <td data-bbox="315 1133 521 1184">우선공급(35%)</td> <td colspan="2" data-bbox="521 1133 2016 1184">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19 1184 315 1235">4단계</td> <td data-bbox="315 1184 521 1235">일반공급(15%)</td> <td colspan="2" data-bbox="521 1184 2016 1235">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19 1235 315 1396" rowspan="2">5단계</td> <td data-bbox="315 1235 521 1396" rowspan="2">추첨공급</td> <td data-bbox="521 1235 813 1318">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data-bbox="813 1235 2016 1318">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521 1318 813 1396">1인 가구</td> <td data-bbox="813 1318 2016 1396">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data-bbox="224 1404 1736 1433">※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1.10.(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685 432 1928 65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512 2033 78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80 1294 2067 143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가점제</th> <th style="width: 33%;">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2.03.(월) ~ 2025.02.12(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2.0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02.07.(금) ~ 2025.02.11.(화)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10)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부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세대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② 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③ 위촉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①,③,④ 해당 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 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지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과세기간 2023년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과세기간 2023년도)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과세기간 2023년도)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홈택스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 부동산		제출서류	발급처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단독주택	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 제외 (해당자)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① 농지대장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정부24 / 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초지 (초지법 제2조1호)	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이음(eum.go.kr) / 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중중소유 토지 (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세대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2.14.(금) ~ 2025.02.16.(일)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1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건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자격검증 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분,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건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건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작성
대리인 계약시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5545945	(주)무궁화신탁

-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계약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제외)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용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 및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6,820,000	682,000		6,138,000	
84A1	7,060,000	706,000		6,354,000	
84A2	7,070,000	707,000		6,363,000	
84B	8,760,000	876,000		7,884,000	
84B1	8,440,000	844,000		7,596,000	
84B2	8,450,000	845,000		7,605,000	

84C	11,360,000	1,136,000	10,224,000
84C1	10,990,000	1,099,000	9,891,000
84C2	7,900,000	790,000	7,110,000
84D	6,700,000	670,000	6,030,000
84P	5,520,000	552,000	4,968,000
84T1	8,620,000	862,000	7,758,000
84T2	9,100,000	910,000	8,190,000
84T3	8,270,000	827,000	7,443,000
84T4	11,900,000	1,190,000	10,71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5546106	(주)무궁화신탁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동일 주택형(타입)일지라도 층/구간별 발코니 확장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및 외부 입면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샷시는 단일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형별, 층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실내기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의 피난구조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검토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 및 철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피난사다리는 위치 및 사이즈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 덮개 및 하부마감은 주위마감과 상이할수 있고 바닥면보다 돌출될수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1) 시스템에어컨(LG전자 프리미엄)

(단위: 원, VAT포함)

타입별 (약식표기)	기본 (옵선 미선택 시)	옵선		공급금액			
		설치대수		설치 위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선택1	선택2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800,000	880,000	7,92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0,600,000	1,060,000	9,54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700,000	1,370,000	12,330,000
84A1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600,000	860,000	7,74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0,500,000	1,050,000	9,45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700,000	1,370,000	12,330,000
84A2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700,000	870,000	7,83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0,700,000	1,070,000	9,63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900,000	1,390,000	12,510,000

84B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000,000	900,000	8,10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700,000	1,170,000	10,53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900,000	1,390,000	12,510,000
84B1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000,000	900,000	8,10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700,000	1,170,000	10,53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400,000	1,440,000	12,960,000
84B2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000,000	900,000	8,10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700,000	1,170,000	10,53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400,000	1,440,000	12,960,000
84C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700,000	870,000	7,83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800,000	1,180,000	10,62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200,000	1,420,000	12,780,000
84C1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700,000	870,000	7,83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600,000	1,160,000	10,44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200,000	1,420,000	12,780,000
84C2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700,000	870,000	7,83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500,000	1,150,000	10,35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200,000	1,420,000	12,780,000
84D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500,000	850,000	7,65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200,000	1,120,000	10,08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400,000	1,340,000	12,060,000
84P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200,000	920,000	8,28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800,000	1,180,000	10,62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200,000	1,420,000	12,780,000
84T1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000,000	900,000	8,10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600,000	1,160,000	10,44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3,400,000	1,340,000	12,060,000
84T2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100,000	910,000	8,19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2,000,000	1,200,000	10,80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500,000	1,450,000	13,050,000
84T3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9,100,000	910,000	8,19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2,000,000	1,200,000	10,80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400,000	1,440,000	12,960,000
84T4	침실1, 거실 벽체 냉매배관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8,600,000	860,000	7,74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3 중 택1)	11,600,000	1,160,000	10,44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4,200,000	1,420,000	12,780,000

2) 가구 및 마감재, 가전 등

(단위: 원, VAT포함)

위치	구분	타입별 (약식표기)	선택		공급금액			
			기본 (옵션 미선택 시)	옵션	공급가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전타입	없음	자동슬라이딩 중문	3,100,000	310,000	2,790,000	
	현관신발장	전타입	일반 신발장	빗각형 선반 조명	1,100,000	110,000	990,000	
침실1	침실1 불박이장	84A, 84A1, 84A2, 84B, 84B1, 84B2, 84C, 84C1, 84C2, 84T1, 84T2, 84T3, 84T4 (84D, 84P제외)	없음	슬라이딩 불박이장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2,3	침실2,3 불박이장	84A, 84B, 84D, 84T1, 84T2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600*2400/1600*2400)D500	2,400,000	240,000	2,16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2+3통합시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84A1, 84B1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385*2400/1385*2400)D500	2,400,000	240,000	2,16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2+3통합시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84A2, 84B2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385*2400/1385*2400)D500	2,400,000	240,000	2,16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4	침실2+3통합시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84C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600*2400/1600*2400)D500	2,400,000	240,000	2,16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3 + 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시스템선반(도어무상)	600,000	60,000	540,000

		84C1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385*2400/1385*2400)D5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3 + 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시스템선반(도어무상)	600,000	60,000	540,000
		84C2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385*2400/1385*2400)D5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3 + 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시스템선반(도어무상)	600,000	60,000	540,000
		84P	없음	선택1	침실2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2	침실3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84T3	없음	선택1	침실2 가구도어 및 시스템 선반	1,400,000	140,000	1,260,000
				선택2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84T4	없음	선택1	칸막이형 불박이장 (1600*2400/1600*2400)D500	2,400,000	240,000	2,160,000
				선택2	침실2 슬라이딩장 (1500*2400)D600	1,700,000	170,000	1,530,000
				선택3	침실3 슬라이딩장 (1800*2400)D600	2,000,000	200,000	1,800,000
				선택4	침실3 + 알파룸 통합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도어무상)	600,000	60,000	540,000
거실, 침실, 주방, 복도	광폭 강마루	84A, 84A1, 84A2, 84B, 84B1, 84B2, 84C, 84C1, 84C2, 84T1, 84T2, 84T3, 84T4	강마루 시공 95*800*7.5T	광폭강마루 165*1205*7.5T	1,100,000	110,000	990,000	
		84D, 84P			1,200,000	120,000	1,080,000	
벽체 타일시공	아트월 세라믹타일	84A, 84A1, 84A2, 84C, 84C1, 84C2, 84D, 84P, 84T3, 84T4	포세린타일 600*1200	대형 세라믹타일시공 아트월간접등	3,200,000	320,000	2,880,000	
		84B, 84B1, 84B2, 84T2			2,800,000	280,000	2,520,000	
		84T1			5,100,000	510,000	4,590,000	

거실 아트월 외 벽체	벽체옵션 (거실 아트월 외 벽체) 세라믹타일, 현관 시트판넬 마감	84A, 84A1, 84A2	실크벽지	대형 세라믹타일시공 (현관시트판넬)	17,400,000	1,740,000	15,660,000
		84B, 84B1, 84B2			20,700,000	2,070,000	18,630,000
		84C, 84C1, 84C2			18,900,000	1,890,000	17,010,000
		84D			17,500,000	1,750,000	15,750,000
		84P			16,700,000	1,670,000	15,030,000
		84T1			21,200,000	2,120,000	19,080,000
		84T2			19,300,000	1,930,000	17,370,000
		84T3			17,000,000	1,700,000	15,300,000
		84T4			19,800,000	1,980,000	17,820,000
		주방상판, 벽, 상부장			주방상부장 조명 +상판 +벽특화	84A, 84A1, 84A2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주방상판-MMA -싱크볼-일반형 -상부장PET도어마 감 -침니형후드
84B, 84B1, 84B2	13,200,000		1,320,000	11,880,000			
84C, 84C1, 84C2	13,100,000		1,310,000	11,790,000			
84D	15,400,000		1,540,000	13,860,000			
84P	13,200,000		1,320,000	11,880,000			
84T1	13,800,000		1,380,000	12,420,000			
84T2	13,500,000		1,350,000	12,150,000			
84T3	13,300,000		1,330,000	11,970,000			
84T4	13,000,000		1,300,000	11,700,000			
확장 상부장 및 하부장 / 키큰장	84A, 84A1, 84A2, 84D		- 시스템 선반	- 확장 상부장 및 하부장/키큰장	2,000,000	200,000	1,800,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특화	84A(장식장 포함)	-드레스룸,화장대 분리형 -드레스룸일반가 구문 -화장대 -시스템선반	- 3연동 유리도어 84A,84A1,84A2,84D,84C,84C1,84C2,84P,84T3, 84T4 - 1도어 유리도어 84B,84B1,84B2,84T1,84T2 - 부부욕실 복합환풍기 - 드레스룸 제습기 - 조명형 거울(간이용 화장대) - 시스템 선반 (※84A,84A1,84A2,84D타입 드레스룸 조명 형 장식장포함)	10,700,000	1,070,000	9,630,000
		84A(장식장 미포함)			2,600,000	260,000	2,340,000
		84A1(장식장 포함)			9,300,000	930,000	8,370,000
		84A1(장식장 미포함)			2,500,000	250,000	2,250,000
		84A2(장식장 포함)			9,200,000	920,000	8,280,000
		84A2(장식장 미포함)			2,400,000	240,000	2,160,000
		84B, 84B1, 84B2			1,400,000	140,000	1,260,000
		84C, 84C2			2,400,000	240,000	2,160,000
		84C1			1,900,000	190,000	1,710,000
		84D(장식장 포함)			12,800,000	1,280,000	11,520,000
		84D(장식장 미포함)			2,700,000	270,000	2,430,000
		84P			2,400,000	240,000	2,160,000
		84T1, T2			1,400,000	140,000	1,260,000
		84T3			2,500,000	250,000	2,250,000
84T4	1,200,000	120,000	1,080,000				
욕실	부부/공용욕실 벽체 타일 및 위생기구, 수전류특화	전타입	- 벽체 300*600 각 타일 -2피스 변기 및 비데(부부) -일반형 수전 및 악세사리	- 벽체 600*600각 대형타일 -일체식비데 -고급수전류 및 악세사리	5,800,000	580,000	5,220,000

거실, 주방	조명특화	84A (주방 확장 적용시)	- 거실:직부등 -주방:매입등 -식탁:직부등	- 거실:라인등(전타입) -주방:라인매입등(전타입) -식탁우물천정+간접등+직부등 (84A,84A1,84A2,84B,84B1,84B2,84D,84T1,84T2, 84P) -식탁주변판넬부착형+ 직부등(84C,84C1,84C2, 84T3,84T4)	2,400,000	240,000	2,160,000
		84A (주방 확장 미적용시)			2,200,000	220,000	1,980,000
		84A1 (주방 확장 적용시)			2,400,000	240,000	2,160,000
		84A1 (주방 확장 미적용시)			2,200,000	220,000	1,980,000
		84A2 (주방 확장 적용시)			2,400,000	240,000	2,160,000
		84A2 (주방 확장 미적용시)			2,200,000	220,000	1,980,000
		84B, 84B1, 84B2			2,400,000	240,000	2,160,000
		84C, 84C1, 84C2			1,200,000	120,000	1,080,000
		84D (주방 확장 적용시)			2,500,000	250,000	2,250,000
		84D (주방 확장 미적용시)			2,400,000	240,000	2,160,000
		84P			2,200,000	220,000	1,980,000
		84T1			2,400,000	240,000	2,160,000
		84T2			2,400,000	240,000	2,160,000
		84T3			1,400,000	140,000	1,260,000
84T4	1,300,000	130,000	1,170,000				
주방	인덕션 쿡탑	전타입	하츠3구(SSGC-36 06EARH)	LG 3구 인덕션 (BEI3WWQLBI)	1,200,000	120,000	1,080,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가구 수납장	LG 14인용 DIE6PT	1,600,000	160,000	1,440,000
	키친핏 냉장고	전타입	-	LG BC1K3AA+ BC1F2AA+ BC1L2AA B322TL-GBE(패널글라스)	4,400,000	440,000	3,960,000
침실1 주변 알파룸	알파룸 도어	84B, 84B1, 84B2, 84T2 (알파룸)	일반 WD	2SD	1,000,000	100,000	900,000

■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계약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5672468	(주)무궁화신탁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 선택 품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행위탁자 (주)세종스마트개발이 부담하고 있으며,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일정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 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 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중도금대출자서기간 등) 추가 설치 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한 추가설치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개방형 발코니 유무 및 실 크기에 따라 드레스룸 특화 및 시스템선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 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벽체마감(주방, 욕실 타일마감포함)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 벽체도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등),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지함, 소방감지기, 스피커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조명기구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등 제외)	배선가구류(스위치 및 콘센트등), 매입등기구
욕실	욕실천정, 타일(바닥/벽),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빌트인 가전기류, 주방TV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일반가구	가구류 일체,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류	
창호	목재문 및 ABS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일반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 도어록
기타	수전류(발코니)	

※ 상기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84A	84A1	84A2	84B	84B1	84B2	84C	84C1
마이너스 옵션 금액	34,785,202	34,911,183	34,890,270	35,329,561	35,305,015	35,330,666	35,178,213	35,089,887
약식표기	84C2	84D	84P	84T1	84T2	84T3	84T4	
마이너스 옵션 금액	35,232,737	35,012,871	35,961,834	35,329,561	35,536,064	35,178,213	36,064,123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배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대한 계약자별 개별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시행지침 제3조, 「주택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제4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 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이상 최소 60일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인지세는 계약자와 시행위탁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통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s://세종양우내안애아스펜.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를 건본주택에 비치하오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고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최저층 로비,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크기,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계획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계획고,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고는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 시공상의 이유로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계획고,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공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은 난방기능이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서(설계변경 포함)에 준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단차 및 단지계획고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리스트,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제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닛,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 견본주택에는 84A, 84C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202동, 1203동, 1205동, 1207동, 1212동, 1215동, 1216동, 1218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202동, 1203동, 1205동, 1207동, 1212동, 1215동, 1216동, 1218동 옥상층 및 지하1층 헬룸 5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본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 동에서 계단실이 다를 경우 동일한 레벨에서 세대 층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통합스위치,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환기유니트, 온도조절기, 실외기 배관, 위생기구, 약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홍통 등은 위치 및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주방상부장의 내부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 또는 공동배기 방식으로 외부에 후드캡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바닥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에는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석재류, 타일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써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일부 세대의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용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 유리난간)의 높이와 사시 설치 높이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주택형(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실외기실 면적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 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타입)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제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연석 또는 인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자재의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석재의 결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자체의 품질 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가스쿡탑 설치 시 가스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옵션 전기 인덕션 설치시에도 가스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지하주차장 외부에서 법정 진입 유효높이 기준은 2.7m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며, 지하 1층구간은 2.7m로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구획의 법정 유효높이는 2.1m로 높이 과다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지하2층 일부 구간(비주거주차장 해당)은 2.7m로 택배차량 주차가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등은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하여 일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소방차량동선 및 소방차정차구역은 인허가 변경 및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 및 수량, 종류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등의 자재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실과 전기공급을 위하여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관련기관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기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되어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제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시행위탁자(또는 시공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계획고 수정으로 인한 경사도 변경시 계획도로에서 단지로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지계획고를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용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기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계획고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혼합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중계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와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건물의 영향으로 일조, 조망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제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고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동선 및 이용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조건 등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계획고,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레벨 계획 변경으로 일부 필로티, 동출입구의 계단 및 램프 길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특화된 동출입구에 따라 일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마다 우편물수취함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와 단지 계획고의 차이로 인해 단지 각 방위 간에 단차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인 주변도로의 구배 및 계획고 변경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주거동의 저층부 계획고는 인접도로보다 낮게 조성됩니다.
- 단지공용 Wifi는 단지내 공개공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이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합니다.

- 단지공용 Wifi에 인접한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주차시스템은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2.7m 이상(지하1층, 지하2층 비주거시설주차장)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휨룸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휨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Untact 안면인식출입관리는 세대부와 공용부의 관련 장치기(안면인식현관카메라, 안면인식로비폰) 및 운영시스템(안면인식관리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세종 5-1 생활권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 입주자는 스마트홈/타운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및 생활정보데이터 (에너지 이용량 등)를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세종 5-1생활권의 공유 커뮤니티 시설이용을 위해 L12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은 스마트홈/타운서비스를 통한 공동 이용을 위해 타 단지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홈/타운서비스 및 스마트서비스 일부의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지 운영의 일부분을 통합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스마트팜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며, 실제 시공시 혹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팜 시설 및 설치의 건축 공사 후 구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야외 및 실내 시설에 대해서 입주인이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고의에 의한 파손 시 입주인이 관리하여 파손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그린라운지 또는 방재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는 입주인이 선정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만일 전문업체가 필요한 경우 운영/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 불량/고장의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수리 조치는 가능하며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에 별도 계약을 전문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입주인이 선정한 관리사무소에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야외/실내 농기구함은 건축물 크기 및 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IOT는 세대부 및 공용부의 관련 장치기(월패드 등)와 운영시스템(단지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신호등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인들이 유지,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합니다.
-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스마트 및 정보통신서비스는 상위계획 및 5-1생활권 선도지구 통합운영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점이 입주 이후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단지내 관로, 투입구 등)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기본 아트월타일 시공은 무메지 공법으로 시공되며,재질에따라 약간의 뒤틀림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테라스 타입의 이동을 위한 방수턱 및 창호는 사이즈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내 도배는 봉투바름으로 가운데가 들떠있는 공법이며,마감을위해 벽체에따라 들뜸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피트니스센터 등이며 기타시설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평면 및 단면 계획변경에 따라 외부 입면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 지하주차장, 동 옥상 설치로 인해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비주거시설 C동 옥상, D동옥상에 냉각탑설치) 인하여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 방과후 교실, 다목적실(아트갤러리),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디지털헬스케어, 상상플러스센터(드론경기장, 플렉스룸, 크리에이터룸), 맘스&키즈카페, 그로잉센터, 스카이크뮤니티,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핼케어센터, 포레스트센터, 티하우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내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단지 외부 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협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인근 송전탑 철거는 시행수탁사 및 시공사가 아닌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할 것입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흡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아파트 1,082대(세대당 1.55대), 혁신성장시설 57대, 오피스텔 51대, 근린생활시설 24대 등 총 1,21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전·입학 관련)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320-2161~3)로 문의
- (학교 배치) 초등학교는 5-1생활권에 계획된 초5-2(가칭 '합강1초'), 중학교는 5학군(가칭 '합강중', '다솜중', '중5-3'),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배치
다만, 개교일이 입주개시일과 맞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음
- (통학구역 확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되므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계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X	지역난방지구로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	세대 내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X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1	0.216g	VII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BL 공동주택
 2. 신청자: ㈜우공화신학
 3.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벽 차단성능	★★★★
2. 중량층벽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영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천연재 녹지율 조성	-
21. 자연면 녹지율	★
22. 생활민원률	★
23. 생활서식공간(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채광률 확보	-
26. 단열내재 환경성 확보	★★
27. 자원으로포함량지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 의 보행자 편의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상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송·유지관리 문서 및 계획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에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	★★
13. 실내투광 조명시스템	★★
14. 행정안전 콘텐츠	★★★★
15. 주차장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정보설비	★★
2. 내연설비	★
3. 내화설비	★★
4. 승용화난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호내비	★★★★
6. 피난설비	★★

11. 지탄소 자체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체의 사용 ★
 13. 유해물질 자재 자체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재활용률 -
 17. 빗물 및 우수저장수 이용 -
 18. 물수령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사)한국 그린 빌딩 협의 회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BL 공동주택
 건축주: ㈜우공화신학
 준공일: 2027.11(예정)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18층
 연면적: 123,643.86㎡
 건축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나우등인 건축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1175-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4.12.2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서 날짜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기준(2016.7)
 [별표1]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4년 12월 24일

(사)한국 그린 빌딩 협의 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20>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BL(주거)
 준공연도: 2027110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 지상18층
 연면적: 139316.3206(㎡)
 건축물의 주변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나우등인건축사무소, ㈜디에이 건축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24-주-에-1+-+0113
 평가자: 현태영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84.0	17.8	1++	48	17.8
에너지 고소비량 건축실제	-	-	-	72	-

에너지 소비율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8	57.8	42.6	9.6
급탕	30.7	39.1	28.6	6.4
조명	7.5	2.5	6.9	1.2
환기	-	1.2	3.3	0.6
합계	84.0	100.6	81.4	17.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V] 설치되지 않음)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등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한국녹색기후기술원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7m	2.3/2.7m	2.7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주)서광이에프	동양종합엔지니어링(주)	(주)한성기술단
감리금액	3,076,406,300	639,675,100	788,069,821	330,000,00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원, VAT 포함)

- 「주택법」 제57조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제15조제1항 관련)에 의거한 항목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72,361,780,00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56,049,510,226	기계 설비	위생기구 공사	2,907,615,198				
	기간이자	4,784,363,557			용접공사	703,389,331		난방설비공사	4,334,841,223				
	필요적 경비	4,214,661,873			조적공사	3,739,822,923		가스설비공사	2,277,836,378				
	그 밖의 비용	17,022,393,625			미장공사	14,416,259,017		자동제어 설비공사	2,613,173,152				
	계	98,383,199,055			단열공사	2,519,115,277		특수설비공사	3,878,865,000				
		방수,방습공사			3,790,941,334	공조설비공사		7,150,840,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1,693,433,434	공사비	목공사	목공사	7,276,969,164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4,951,112,746	
		흙막이공사			9,931,814,593			그밖의 공사비	가구공사		4,388,840,907	정보통신공사	27,052,667,596
		비탈면보호공사			339,426,247				금속공사		3,688,704,512	소방설비공사	5,188,921,610
		옹벽공사			682,593,815				지붕 및 홈통공사		1,930,231,186	승강기공사	5,293,822,607
		석축공사			588,884,091				창호공사		5,956,317,209	일반관리비	14,199,481,008
		우.오수공사			633,868,292				유리공사	4,016,940,326	이윤	13,716,698,654	
		공동구공사			327,157,828	타일공사	4,639,506,950	계	296,610,678,16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76,640,450	간접비	돌공사	3,853,305,795	설계비	3,558,667,465			
		도로포장공사			572,526,199		도장공사	4,592,478,013	감리비	1,392,522,05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39,426,247	도배공사	3,328,830,901		일반분양시설경비	1,160,435,043					
		정화조시설공사	276,039,417	수장공사	3,882,954,473		분담금 및 부담금	1,547,184,936					
		조경공사	1,760,518,063	주방용구공사	3,171,386,197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1,118,470,825	잡공사	1,505,743,904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3,481,305,129					
		건축	공통가설공사	4,931,904,259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2,320,775,843	계	11,140,114,625			
	가시시설물공사		1,665,437,819	급탕설비공사			2,275,791,642	그 밖의 비용	13,569,092,154				
	지정 및 기초공사		4,385,959,634	오배수설비			2,478,220,548	합계	419,703,084,000				
	철골공사		12,894,666,103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원, VAT 포함)

-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4,784,363,557	건축비 가산항목	사업승인 조건공사비	법정초과조경공사비	721,545,541	
	제세공과금	3,883,029,318			문주특화공사비	1,495,272,488	
	말뚝박기 공사비	6,162,292,785			커튼월록 설치	757,144,853	
					돌출발코니 설치	1,768,511,156	
					테라스 설치비용	190,572,321	
	지역난방부담금	928,286,247			측벽창호설치비용	16,233,691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9,931,814,593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공사	15,508,681,721	
	택지와 관련된 경비	331,632,555			홈네트워크	스마트 도시 단지 내 네트워크 서비스	21,667,935,000
	소 계 (택지비 가산항목)	26,021,419,055			에어컨냉매배관	4,029,235,956	
기계환기설비			5,946,173,521				
		쓰레기 이송설비 공사	2,866,121,428				
		분양보증수수료	1,663,424,09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공사	5,433,988,072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4,312,933,245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4,539,837,509				
		법정 개정에 따른 가산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비용	9,639,293,895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643,808,550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82,200,713,043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 급	AA등급		비 고
	기 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세대 단자함과 월패드 간 Cat5e 4페어 이상	침입감지기	
	2	세대 단자함과 월패드 간 22C 배관	차량통제기	
	3	통신 배관실 (TPS)	전자경비 시스템	
	4	단지 서버실 (MDF)	무인택배 시스템	
	5	가스밸브 제어기	욕실폰 (부부욕실)	
	6	조명제어기	주방TV	
	7	난방 제어기	일괄소등 제어	
	8	현관 방법 감지기	디지털 도어락	
	9	주동현관 통제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10	원격검침 전송 장치	-	
	11	-	현관도어 카메라	
	12	-	대기전력 차단 장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1292024-101-0007900	333,532,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세종스마트개발과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양우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현존하는 신탁재산 (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세종스마트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주)세종스마트개발과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세종스마트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세종스마트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인 (주)세종스마트개발과 시공사인 양우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 호	(주)무궁화신탁	(주)세종스마트개발	양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64711-0133196	110111-0618194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포스코P&S타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3길 18, 506호(대평동,해피라움블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 세종 5-1 양우내안에 아스펜 견본주택 및 현장 안내

견본주택	현장

- 견본주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10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51-3001
- 홈페이지 : <https://세종양우내안에아스펜.com>

- 현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2-28번지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BL)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